



미니 KOSPI200 선물, 옵션도 과세의 대상으로...

What's new

- 최근 발표된 뉴스 중 시장 참여자의 관심이 큰 뉴스는 KOSPI200지수 관련 파생상품의 과세 여부임
- 이와 관련하여 과세 여부를 점검하고 차후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필요

Our view

- 기존 전망과 같이 이번 KOSPI200지수 관련 양도세 과세는 장기적으로 개별주식 파생상품의 거래량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
- 직접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고 상품의 이해도 빠르게 할 수 있는 개별주식 선물 및 옵션에 투자자들의 집중이 가능하기 때문
- 앞으로의 관심은 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진입규제를 얼마나 완화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될 것임!

미니 KOSPI200 선물, 옵션 과세 확정

- 미니 KOSPI200 선물, 옵션도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대상으로 포함 (세법 시행규칙 개정)
- 기존에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던 KOSPI200지수 선물 옵션 과세에 추가로 미니 KOSPI200 상품이 포함된 것
-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소폭이나마 부담이 증가할 것!
- 장기적으로는 KOSPI200지수 관련 파생상품의 거래량 감소 및 기타 파생상품의 거래량 증가에 영향 미칠 것!

개별주식 선물/옵션에 주목할 수 밖에 없는 이유!

- 결국 개별주식 파생상품은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 과세의 차별성 및 시장 접근 용이성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시장의 무게중심이 KOSPI200지수 관련 파생상품에서 개별주식 선물 및 옵션 등으로 이동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
- 이에 따라 기관 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자의 개별주식 파생상품시장 참여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
- 더불어 개별주식 관련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앞으로의 관심은 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진입규제를 얼마나 완화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될 것임!

미니 KOSPI200 선물, 옵션 과세 대상 확정

미니 KOSPI200 선물, 옵션도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었음. 전전일 발표된 ‘2015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미니 KOSPI200 선물, 옵션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추가된 것이 발표 되었기 때문임.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시행 규칙으로 구체화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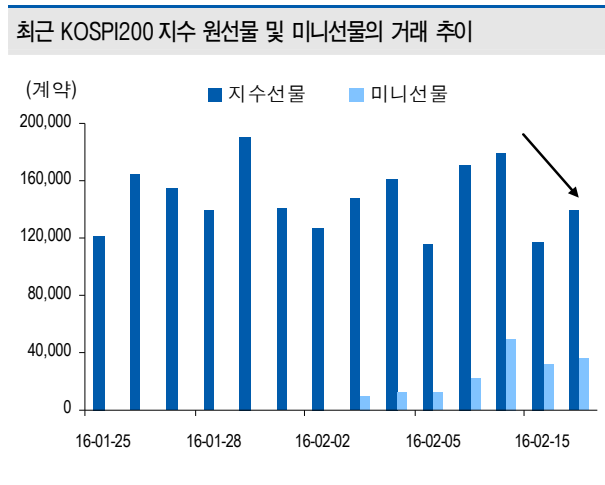
기존까지는 지난 1월부터 KOSPI200 선물, 옵션에만 부과하던 파생상품 양도세가 유사한 파생상품을 과세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한 소득령에 따라 미니 KOSPI200 선물 및 옵션에까지 확대 적용된 것임. 물론 이러한 적용은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으므로 사실상 유예기간을 4개월 가량 적용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시장의 우려에 있던 부분이 현실화 되었음. KOSPI200지수와 관련된 모든 파생상품이 양도세 대상이 됨에 따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임. 더불어 신고 및 정산 절차까지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더해진 것으로도 볼 수 있음.

이런 변화는 당장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임. 과세 기간이 올해 내에 시작되지만 1년치 거래 및 양도 내역을 모아 양도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작업은 내년 1~2분기에나 진행될 것이기 때문임. 게다가 세율이 당초 10%에서 5%로 낮춰진 점도 영향을 줄이게 되는 요소임. 물론 기본적으로 양도세 과세는 파생상품의 발전에 있어 상품간 차별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큼. 장기적으로는 KOSPI200지수 관련 파생상품의 거래량 감소 및 기타 파생상품 거래량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임.

양도소득세	대상, 적용, 차이 등
기존	<KOSPI200 선물, 옵션> 2016. 1. 1 적용 승수 50만원
추가	<미니 KOSPI200선물, 옵션> 2016. 7. 1 적용 승수 10만원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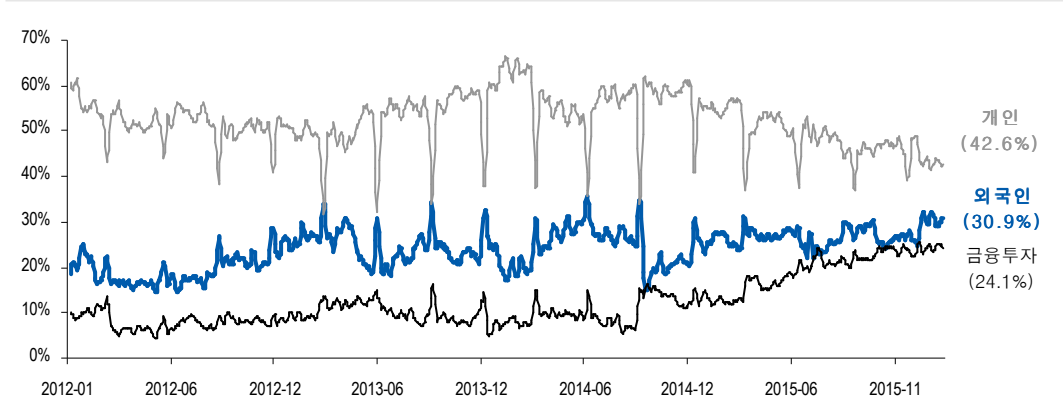
선물옵션 투자전략

개별주식 선물/옵션! 커질 수 밖에 없는 이유!

결국 이런 이유에서 개별주식 선물 및 옵션 시장은 커질 수 밖에 없음. 기존 KOSPI200지수 관련 파생상품에 쏠려 있던 시장이 비과세 영역이자 상대적으로 상품에 대한 이해가 쉬운 개별주식 선물 및 옵션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게다가 실제로 개별주식을 매매하던 투자자들이 종종 이긴 하지만 개별주식 파생상품으로 거래의 대상을 넓히고 있는 사례들이 존재함. 물론 아직까지는 파생상품의 거래 진입 규제가 있어서 쉬운 결정은 아닐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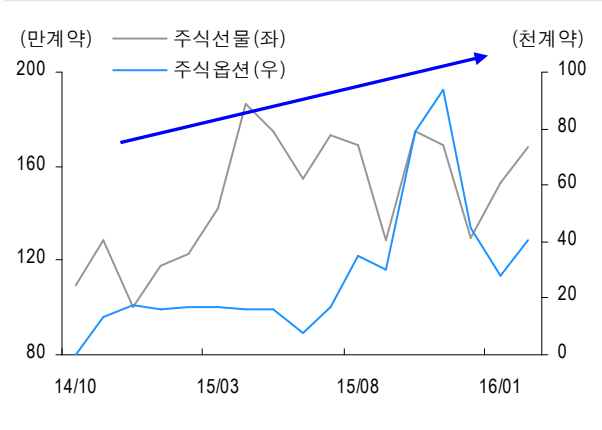
실제로 개별주식선물의 거래 빈도를 살펴봐도 개인의 비중이 감소하고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 중 금융투자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개인의 비중이 감소했다고 시장이 위축되는 것이 아닌 개인 투자자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및 금융투자자가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임!

개별주식선물 투자자별 매매 비중 5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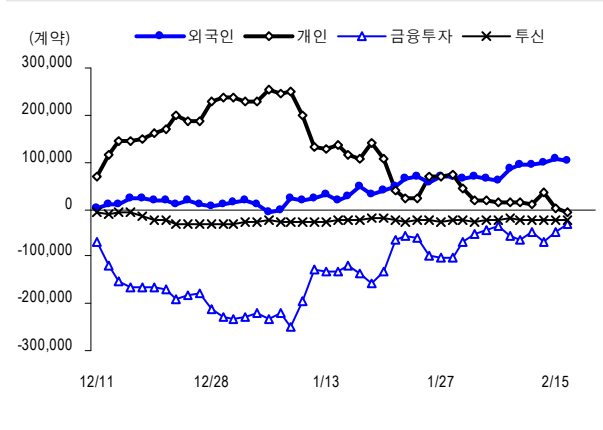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선물 및 주식옵션의 총 미결제약정(월단위) 추이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 주체별 개별주식선물 누적 순매매 추이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더불어 개별주식선물 및 개별주식옵션의 미결제약정 수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월간으로 봐도 미결제약정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 진입하려는 투자자들이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것임. 개별 종목이 증가하는 등의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데도 꾸준히 월간으로 우상향 하고 있는 것!

과세의 차별성 및 시장 접근 용이성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시장의 무게중심은 개별주식 선물, 옵션 등으로 이동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은 손쉽게 할 수 있을 것. 게다가 헤지펀드(Hedge fund) 및 각종 공모형 펀드내에서도 소폭이나마 개별주식 파생상품의 거래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헤지펀드의 경우 전략의 상당수를 개별주식선물을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결국 현 상황에서 개별주식 관련 파생상품시장으로의 무게 중심 이동은 피할 수 없는 추세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더불어 앞으로의 관심은 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시장 진입 규제를 얼마나 완화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달려 있을 것임. 시장 진입 규제를 감소 시키는 수준만큼 개별주식 관련 파생상품 시장 진입이 용이해 질 것이기 때문임.

(* 참고로 이번 시행규칙 신설(§ 76의 2)은 소득령(대통령령) § 159의 2에 따른 것으로 개별주식 관련 파생상품은 아직까지 소득령(대통령령)에도 포함되지 않기에 당분간은 과세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